

# '20년 주택지원사업 공공주택분야 사업계획 제출 안내

## □ 목적

- 공공주택에 태양광, 태양열 등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실현

## □ 관련근거

-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-13호 “신·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” 제4조(시행기관)
-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-5호 “신·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” 제18조(협약체결)

## □ 사업개요

- 지원대상 : 공공주택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제외)
  - \*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1호 가목의 주택으로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(영구임대주택, 국민임대주택, 행복주택)
- 지원분야 : 태양광, 연료전지
- 지원자격 :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
- 보조금 지원 : '20년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단가를 기준으로 협의 결정
  - ※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은 설치환경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며(기준단가 미제시) 감리비용은 불포함
-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별 사업계획서 접수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
  - 사업계획서 제출 전 구체적인 사업관련 사전 협의 요망(사업내용, 기간, 예산 등)

## □ 사업계획서 작성방법

- 사업계획서 제출은 '20년도 지원대상 및 설비 설치용량 파악 목적이며 사업계획서 양식[별첨1] 참조하여 작성
  - 센터 내 통합모니터링 시스템(REMS)\* 의무 연계 필수
    - ※ 통합모니터링 연계방법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REMS 시스템 내 공지사항 확인 요망
    - \* <https://rems.energy.or.kr> - 게시판 - 공지사항
      - '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(REMS) 연동 유의사항 및 절차안내'
    - ※ 시공기업은 “하자이행보증증권” 발행 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통합모니터링 연계 비용 전체를 포함한 사업비에 대해 증권을 발행하여야 함
    - ※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은 신재생에너지설비(REMS포함)에 대해서 시공기업이 계약한 모니터링 업체와 유지관리가 5년간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
- 사업계획서 작성 시, '20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단가[별첨2]를 참고로 사업비를 적용하여 최종 사업계획서 접수 예정

## □ 제출기한 : '20. 4. 17(금) 까지 공문 제출

- 사업계획서 작성 등 관련 문의 : 신재생에너지보급실 052-920-0772

## □ 향후계획

- '20년도 주택지원사업 공공주택분야 참여대상 기관 업무 협의 및 사업계획서 제출·접수(~4/17)
  - 예산 범위 초과 시, 예산범위 내 신청용량 및 가구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배정 후, 지원
- '20년도 공공주택지원사업 협약체결(사업계획 승인 후)
- 협약기관별 국고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(5월~)

- 별첨 : 1. '20년 주택지원사업 공공주택분야 사업계획서 1부  
2. '20년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기준 1부. 끝.

[별첨1]

## '20년 주택지원사업 공공주택분야 사업계획서

기 관 명				
작 성 자	소 속			
	성 명		전 화 (핸드폰)	
	fax		E-mail	

### 1. 사업개요

사업목적

사업추진방향

○ 사업비, 사업규모, 지원조건, 사업기간 등

○ 사업내용의 수요과약 등 신뢰성, 타당성, 설치여건 및 시설용량의 적정성, 보수정비 체계, 보급제품의 선택기준, 고객만족체계(불량 제품 및 서비스 근절방안 등) 등

○ 통합모니터링시스템(REMS) 설비 설치 및 운용 계획 (A/S포함)

- 지원 단지가 아닌 설치 개소(아파트 동)별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요망

## 2. 세부사업계획

### 세부 사업추진계획(종합)

분야	지원단지 개소	지원호수 합계	용량 총계 (kW)	사업비(백만원)				토지구택공사 or 지방공기업 지원 비율 (%)
				정부 보조금 (REMS 지원금 포함)	토지구택공사 or 지방공기업 지원금	자부담금	사업비 합계	
태양광								
합계								

### 한국토지구택공사 or 지방공기업 예산 확보계획(일정포함)

### 사업기간(월별계획 수립)

월별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합계
지원단지 개소							
호수							
토지구택공사 or 지방공기업 지원총액 (백만원)							

□ 에너지원별 사업추진계획

○ 공공주택 추진계획

분야	지원단지명칭 (○○아파트)	지원총계			소재지	지원사유 (주거환경개선, 에너지소외계층지원, 이주단지 등)
		호수	용량 (kW, m <sup>2</sup> )	토지주택공사 or 지방공기업 지원금액		
태양광	○ ○				○ ○	
합계						

3. 사업비 산출근거('20년 주택지원사업 지원단가 참고하여 작성)

\* 설치 개소별 모니터링시스템(REMS) 사업비 산출

분야	지원호수(호)	산출근거	총사업비 (백만원)
태양광			
합계		-	

#### 4. 사업 기대효과 종합(시설 완료후 예상 효과)

- 신·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화석에너지 대체량(석유환산TOE/년)
- 에너지 이용 편익 및 환경개선 효과 등

[별첨2]

'20년도 주택지원사업 공공임대주택 관련 보조금 지원단가

□ 정부보조금 지원 기준

○ 에너지원별 용량별 지원기준

(단위 : 천원, VAT포함)

에너지원	지원 구분*		보조금 지원단가	도서지역 지원단가	
태양광 (고정식)	단독주택	2.0kW이하	1,037/kW	1,244/kW	
		2.0kW초과~3.0kW이하	838/kW	1,005/kW	
	공동주택	~ 30kW/동	908/kW	1,089/kW	
태양열	평판형· 진공관형	7.0㎡이하	10.0MJ/m <sup>2</sup> ·day초과	669/m <sup>2</sup>	802/m <sup>2</sup>
			7.5MJ/m <sup>2</sup> ·day초과~ 10.0MJ/m <sup>2</sup> ·day이하	620/m <sup>2</sup>	744/m <sup>2</sup>
			7.5MJ/m <sup>2</sup> ·day이하	566/m <sup>2</sup>	679/m <sup>2</sup>
		7.0㎡초과~ 14.0㎡이하	10.0MJ/m <sup>2</sup> ·day초과	583/m <sup>2</sup>	699/m <sup>2</sup>
			7.5MJ/m <sup>2</sup> ·day초과~ 10.0MJ/m <sup>2</sup> ·day이하	537/m <sup>2</sup>	644/m <sup>2</sup>
			7.5MJ/m <sup>2</sup> ·day이하	488/m <sup>2</sup>	585/m <sup>2</sup>
		14.0㎡초과 ~20㎡이하	10.0MJ/m <sup>2</sup> ·day초과	516/m <sup>2</sup>	619/m <sup>2</sup>
			7.5MJ/m <sup>2</sup> ·day초과~ 10.0MJ/m <sup>2</sup> ·day이하	475/m <sup>2</sup>	570/m <sup>2</sup>
			7.5MJ/m <sup>2</sup> ·day이하	431/m <sup>2</sup>	517/m <sup>2</sup>
	자연순환식 온수기	6.0㎡급	3,368/대	4,042/대	
지열	수직밀폐형	10.5kW이하	691/kW	829/kW	
		10.5kW초과~17.5kW이하	637/kW	764/kW	
연료전지	1kW이하		15,578/kW	18,693/kW	

\* 지원 구분 : 설치대상, 설비구분, 설치용량, 집열량(성능)

○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연계비용

구분	REMS 연계비용	보조금액	비고
연계시스템 설치 및 통신비 지원	태양광	650천원/개소	325천원/개소
	태양열	1,050천원/개소	472천원/개소
	지열	1,650천원/개소	825천원/개소
	연료전지	650천원/개소	325천원/개소
			설치 후 5년간 의무유지, 보조금액 외 추가 지원 없음(자부담)